

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안내

- 투표일시 : 1월 10일(토) 9시부터 11일(일) 16시까지
- 투표방법 : 카카오톡 알림톡(전송 실패자 대상 문자 발송) ※ 재외국민 이메일발송
 - 기표방법 : 선호투표
 - 선호투표란 유권자가 각 후보자에게 선호하는 순위(1~4순위)를 매겨 투표하는 방법
- 원내대표 선출방법
 - 국회의원 유효투표결과 80% +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20% 합산하여 선출
 - ▶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 나오지 않을 경우,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(차점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 포함)의 결선투표 실시
 - ▶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결선투표 결과 + 권리당원 투표(1차 합산결과의 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하여 결선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, 만약 2순위 표가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이면 3순위 표가 결선후보자에 가산)
 - ▶ 국회의원 80 : 권리당원 20 득표율을 환산하여 반영
 - * 하위 득표자의 기준 : 1차 투표에서 국회의원 80% + 권리당원 20% 합산한 결과,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득표자

○ 관련 규정

<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>

제44조(원내대표 선출방법), 제48조의2(선호투표), 제48조의3(결선투표), 제68조(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)

-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-